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4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3호, 2025.1.2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5년 3월 5일
보건복지부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-1 가. 초진 진찰료 주5.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
가-1		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.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: 5. 의원급 요양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 및 병원급 요양기관(치과병원, 한방병원 제외)에서 토요일 09시 후~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(초진) 소정점수의 30%를 별도 산정한다. 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 다만,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.	

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-1 나. 재진 진찰료 주5.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
가-1		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나.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: 5. 의원급 요양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 및 병원급 요양기관(치과병원, 한방병원 제외)에서 토요일 09시 후~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(재진) 소정점수의 30%를 별도 산정한다. 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 다만,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.	

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[산정지침] (10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산정지침]

- (10) 토요일 09시 후~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(약-2), 복약지도료(약-3) 및 조제료(약-4) 소정점수의 30%를 별도 산정한다. 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 다만, 09시 이전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	제1편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
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	제2부 행위 급여 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
제1장 기본진료료	제1장 기본진료료
제1절 기본진료료	제1절 기본진료료
가-1 외래환자 진찰료	가-1 외래환자 진찰료
가. 초진진찰료	가. 초진진찰료
주 : 1. ~ 4. <생략>	주 : 1. ~ 4. <현행과 같음>
5. <u>토요일 09시 후~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 및 병원급 요양기관(치과병원, 한방병원 제외)에 기본진찰료(초진) 소정 점수의 30%를 별도 산정한다.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</u>	5. <u>의원급 요양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 및 병원급 요양기관(치과병원, 한방병원 제외)에서 토요일 09시 후~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(초진) 소정 점수의 30%를 별도 산정한다.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 다만,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.</u>
6. <생략>	6. <현행과 같음>
나. 재진진찰료	나. 재진진찰료
주 : 1. ~ 4. <생략>	주 : 1. ~ 4. <현행과 같음>
5. <u>토요일 09시 후~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급 요양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 및 병원급 요양기관(치과병원, 한방병원 제외)에 기본진찰료(초진) 소정 점수의 30%를 별도 산정한다.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</u>	5. <u>의원급 요양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 및 병원급 요양기관(치과병원, 한방병원 제외)에서 토요일 09시 후~13시</u>

현행	개정안
<u>병원, 한방병원 제외)에</u> 기본진찰료(재진) 소정 점수의 30%를 별도 산정 한다.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 6. ~ 9. <생략> 제15장 약국 약제비 [산정지침] (1) ~ (9) <생략> (10) 토요일 09시 후~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(약2), 복약지도료(약3) 및 조제료(약4) 소정점수의 30%를 별도산정 한다.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 (11) ~ (12) <생략>	<u>전 진료시에는 진찰료</u> <u>중 기본진찰료(재진) 소정</u> <u>점수의 30%를 별도 산정</u> <u>한다.(산정코드 두 번째</u> <u>자리에 3으로 기재) 다만,</u> <u>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</u> <u>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</u> <u>시간을 적용한다.</u> 6. ~ 9. <현행과 같음> 제15장 약국 약제비 [산정지침] (1) ~ (9) <현행과 같음> (10) 토요일 09시 후~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(약2), 복약지도료(약3) 및 조제료(약4) 소정점수의 30%를 별도 산정 한다.(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) <u>다만, 09시 이전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</u> <u>해당 시간을 적용한다.</u> (11) ~ (12) <현행과 같음>